16. 環境影響評價法施行令

大統領令 第14,018號, 1993. 12. 1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제16호에서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태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풍수해대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처장관과 협의한 사업

제3조(평가서초안의 작성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초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3. 환경현황의 조사내용
4.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분석 및 평가
5.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 및 저감방안의 강구내용
6.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등) ①사업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처장관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인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인 2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체에서의 토지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
5.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
6.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등을 2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30일이상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③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되, 공고내용중 공람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안의 장소가 1개소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①제4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만료후 10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개최여부를 공람기간만료후 14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설명회의 개최등) ①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설명회일시 및 장소등을 설명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2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공고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등) ①법 제9조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이상 30인미만인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공청회일시 및 장소등을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2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공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술신청서를 접수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공술내용중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공청회종료후 7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제1항각호의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4항·제5조 및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9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8조(평가서의 내용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

영향조사에 관한 계획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평가서의 제출시기등)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시기 및 승인기관의 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할 시기는 대상사업별로 별표1과 같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대상전문가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등"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또는 동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3. 기타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평가서의 검토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협의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환경처장관에게 평가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평가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의신청기간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내용 및 사유
2.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제13조(재협의대상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중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위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진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규모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시의 사업계획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또는 별표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규모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중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위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시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14조(환경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거나 승인기관의 장등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강구내용

제15조(비용부담) ①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비용
2. 기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②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집행하기전에 소요비용내역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
3. 별표 2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등의 제출요청 또는 전문가등의 의견수렴

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통보

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의 내용 또는 확정된 사업계획등의 내용에 대한 통보의 수리

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수리

사.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에 관한 권한

아.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의견통보등에 관한 권한

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자에 대한 현지조사·확인

차.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카.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한 조치 또는 명령내용에 대한 통보의 수리

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내용등에 대한 통보의 수리

파.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의 수리

하.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의 통보의 수리

4. 별표 2에 규정된 대상사업외의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

나.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한 조치 또는 명령내용에 대한 통보의 수리

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내용등에 대한 통보의 수리

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의 수리

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필요성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처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별표1의 대상사업에 규정되어 새로이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된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1994년 6월12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 별표 2 및 별표 3을 삭제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 로 본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 및 제9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전 또는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확정전
	(2)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중 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승인전
	(3)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전
	(4)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
	(5)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전(건설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의 확정전)
	(6)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시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7)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중 다음사업 (가)운하 (나)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주차장시설로서 부지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것 (라)자동차정류장으로서 부지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것 (마)시장으로서 부지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것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8)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9)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전
	(10)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서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전 또는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
	(11)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완료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기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의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⑿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으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하수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설치인가전.
나.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3)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4)중소기업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중소기업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5)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을 지정하기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6)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1)내지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업단지내의 공장용지에 입주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확인서의 교부전. 또는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로 간주되는 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신고·입주계약·인가 및 면허등의 완료전
	(7)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다. 에 너 지 개발	(1)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설정허가전
	(2)광업법에 의한 광업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25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3)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중 다음 사업 (가)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이상인 것. 다만, 댐 및 저수지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이상인 것 (나)345킬로볼트이상의 가공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이상인 것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다)345킬로볼트이상의 옥외변전소 (라)회처리장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것 (마)저탄장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것	
	(4)원자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사업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허가전(원자력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전
	(5)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가)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이상인 것. 다만, 댐 및 저수지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이상인것 (나)345킬로볼트이상의 가공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이상인 것 (다)345킬로볼트이상의 옥외변전소 (라)회처리장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마)저탄장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전기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허가전
	(6)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송유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라. 항만건설	(1)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외곽시설 (나)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가)및 (나)와의 어항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항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계획의 확정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전)
	(2)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외곽시설 (나)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가)및 (나)외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확정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3)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서의 준설사업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항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확정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로·박지등의 유지를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제거를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전
마. 도 로 건설	(1)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중 다음 사업 (가)4킬로미터이상의 신설(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폭 2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2차선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이상의 확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기타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전)
바. 수 자 원 개발	(1)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중 댐 또는 하구언으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확정전,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확정전, 기타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으 인가전
	(2)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중 만수면적 20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000만세제곱미터이상의 보 또는 저수지의 건설사업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전(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3)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간사업부대시설중 저수지 또는 유수지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전
사.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1)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사업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인 것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기타의 경우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사설철도와 전용철도의 경우에는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
	(2)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중 길이1킬로미터이상인 것	○도시철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3)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중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인 것	○삭도·궤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전
아.공항의 건설	(1)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중 다음 사업(헬리포트는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 한한다) (가)비행장의 신설 (나)활주로로서 길이 500미터이상인 것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 또는 동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확정전, 기타의 경우에는 동법 제75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또는 동법 제95조제1항후단의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다)(가)및 (나)와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다음 사업 (가)하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이상인 것 (나)토석·자갈·광물의 채취사업으로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2만제곱미터이상, 상수원보호구역상류로서 유수거리 5킬로미터이내에서는 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확정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으한 실시계획의 인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완료 또는 승인전).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전(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전)
차.매립 및 개간사업	(1)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사업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2)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간사업중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확정전
카. 관광단지의 개발	(1)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2)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
	(3)온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온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전(서울특별시·직할시의 경우에는 동항당선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확정전)
	(4)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자연공원법 제2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의 공고전
	(5)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로서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6)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으한 조성계획의 결정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타. 체 육 시 설의설치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골프장으로서 18홀이상인것 (나)스키장 또는 경륜장으로서 총용지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것 (다)(가)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총용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어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2)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중 총용지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3)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사업중 토지형질변경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전)
	(4)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중 시설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청소년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
파. 산 지 의 개발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업	
	(1)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로서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설치계획의 확정전)
	(2)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로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전
	(3)채석·채토·채광을 위한 산림훼손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4)(1)내지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중 산림훼손면적이 3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전
하. 특정지역의개발	(1)가.에서 파.까지의 사업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거. 폐기물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미터이상인 것	○오수·분뇨및출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전 또는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의 허가전
	(2)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가)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나)특정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전 또는 동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또는협의요청시기
	설로서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다)소각처리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너. 국방·군사시설의설치	(1)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전,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전
	(2)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업 (가)비행장의 신설 (나)활주로로서 길이 500미터이상인 것 (다)(가)및 (나)외의 사업으로서 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전,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전
	(3)해군기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것. 다만,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전,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전

[별표 2]

지방환경청장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16조제3호 관련]

1.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는 대상사업으로서 그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사업
2.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으로서 그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
3. 별표 1의 다. 에너지개발관리 (3)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중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동란의 (5)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사업중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공포됨(1993. 6. 11. 법률 제4567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설명회·공청회등 주민의견을 수검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업으로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을 정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와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2조·제9조 및 별표 1).

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자가 작성하

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 및 저감방안 강구내용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서에는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각각 그 작성방법등을 정함(령 제3조 및 제8조).

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및 설명회·공청회개최요건등 주민의견을 수검하는 방법·절차 등을 정함(령 제4조 내지 제7조).

라. 환경처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전문가의 범위를 공청회에서 의견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와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의 위원등으로 함(령 제10조).

마.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이후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할 대상인 사업계획의 변경범위를 대상사업의 면적·길이·용량등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등으로 함(령 제13조).

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민의견수검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문공고비용등으로 하되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공고·공람을 주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비용을 집행하기 전에 소요비용의 내역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함(령 제15조).

〈법제처 제공〉

깨끗한 산, 깨끗한 물, 깨끗한 마음